

한국과 스웨덴의 기본소득제 도입 가상(假想)상황 비교

박승희* · 김금자** · 김종환*** · 홍세영****

차 례

1. 들어가며
2.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소득보장제도의 비교 기준
 - 2.1 기본소득제란?
 - 2.2 기본소득제와 현행 소득보장제의 결합 방안
 - 2.2.1 단순 기본소득제
 - 2.2.2 보완 기본소득제
 - 2.3 사회보장제의 비교 기준
3. 한국의 기본소득제 도입 상황의 전후 비교
 - 3.1 한국 현행 소득보장 개요
 - 3.2 단순 기본소득제 도입 상황 검토
 - 3.2.1 단순 기본소득제 내용
 - 3.2.2 도입 전후의 비교
 - 3.3 보완 기본소득제 도입 상황 검토
 - 3.3.1 보완 기본소득제 내용
 - 3.3.2 도입 전후의 비교

* 책임연구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 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교수

4. 스웨덴의 기본소득제 도입 전후 상황 비교

4.1 스웨덴 현행 소득보장 개요

4.2 단순 기본소득제 도입 상황 검토

4.2.1 단순 기본소득제 내용

4.2.2 도입 전후의 비교

4.3 보완 기본소득제 도입 상황 검토

4.3.1 보완 기본소득제 내용

4.3.2 도입 전후의 비교

5.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5.1 한국 단순 기본소득제와 스웨덴 제도들의 비교

5.2 한국 보완 기본소득제와 스웨덴 제도들의 비교

6. 결론과 제언(提言)

1. 들어가며

최근 한국에서도 소득보장의 한 방편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늘고 있다¹⁾. 이 주장에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사회보장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과연 그런가? 좋아진다면 어떤 점에서 얼마나 좋아지는가? 우리가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 담백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다. 도입해서 좋을 것이 없다면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제가 도입된 상황을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전후(前後) 비교만으로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의와 한계가 있는가를 확인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사회보장이 겨우 출발단계에 있는 한국의 경우를, 스웨덴처럼 이미 사회보장제가 잘 정착된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본소득

1) 이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 전자방 속의 '기본소득네트워크'(<http://cafe.daum.net/basicincome>)를 지적할 수 있다.

제의 의의와 한계는 이미 소득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진 곳에서 더욱 간명하게 들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축구 선수의 실력은 세계적 선수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잘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스웨덴의 현제도와, 기본소득제가 도입된 가상제도는 한국의 현재와 소득소득 도입 상황을 비추어보는 거울이라고 볼 수다.²⁾

그런데 이런 비교 연구는 아직 없다. 주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연구(박홍규, 2008; 이명현, 2007; 광노완, 2007)와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 가능성과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김교성, 2009; 강남훈·광노완, 2008)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에 기본소득제가 도입된 가상 상황을, 한국의 현 소득보장제도와 먼저 비교한 다음, 스웨덴의 현 소득보장제도 및 스웨덴에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가상 상황과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기본소득제의 개념과 소득보장제도의 비교 기준

2.1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이란 정치적인 공동체가 그 구성원에게, 자산 조사도 하지 않고 기여 여부도 따지지 않으며, 소요(所要, needs)³⁾와 무관하게, 노동도 요구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소득이다⁴⁾. 그 금액은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

2) 스웨덴에 대한 이런 가상(假想) 실험은 스웨덴의 기본소득제 도입 가능성 및 당위성 따위와는 무관하다.

3) needs는 사회적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 즉 소요(所要)이다. 이것은 필요 자체가 아니라 필요한 바이다. 따라서 욕구(慾求)라고 번역하면 무리가 따른다. 욕구는 욕망(desire)을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욕구가 needs의 번역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욕구'를 욕망으로 이해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하는 욕구조사는 needs 조사가 아니라 바라는 바의 조사이다.

4) 기본소득의 세세한 내용은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그 근간은 큰 차이가 없다. Philippe Van Parijs(2004)는 기본소득에 관한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면서, 기본소득의 근간을 잘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본소득을 지급하면, 면세점을 폐지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課稅)한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은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가치분소득은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급하는 주체는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일 수도 있고, 유럽공동체나 국제연합과 같은 초국가적인 조직일 수도 있다. 재원은 일반조세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알래스카의 석유수익금처럼 특별재정수입일 수도 있다. 지급하는 것은 현물이나 이용권(voucher)이 아니라 현금이다. 이 소득은 정기적으로 예컨대 매월 지급한다. 이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어느 정도로 대체할 것인가는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회부조⁵⁾의 생계급여, 실업급여, 노령연금, 병가급여, 장애급여 등과 같은 소득보장의 급여(benefit)⁶⁾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보육, 교육, 의료, 수발 등의 권우(眷佑, human service)⁷⁾는 물론, 장애수당이나 아동수당⁸⁾ 등과 같이 기본 급여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은, 사회보장의 원칙을 허물지 않는 한,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2.2 기본소득제와 현행 소득보장제의 결합 방안

기본소득제의 골간에는 이견도 적고 견해 차이도 크지 않지만, 세부내

-
- 5) '공공부조'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회보험, 뒤에서 설명할 '사회보공'의 개념과 조화를 이루도록 '사회부조'라고 부르기로 한다.
- 6) 스웨덴의 사회보장 현금 급여의 영어이름(Försäkringskassan, 2010)을 살펴보면 급여(benefit)와 수당(allowance)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우리말에서는 급여(給與)는 본봉(本俸)에 해당되며, 수당(手當)은 소득에 추가되는 현금이다. 예컨대 육아 휴직 시에 월급의 80%을 지급하는 현금은 육아급여(parental benefit)이고, 아동이 1인인 경우에 매월 1,050크로나(171,948원)인 아동양육보조금은 아동수당(child allowance)이다. 이 글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급여'와 '수당'을 사용한다.
- 7) 인적 서비스로 표현하지니, 너저분할 뿐만 아니라 표현도 명확하지 않아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보았다. 이것은 사람이 몸과 마음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8) 만약 기본소득이 아동에게도 지급된다고 한다면, 아동수당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용은 주장하는 사람과 각 사회의 사정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상상적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방안들을 다 적용해 볼 수는 없으므로, 한국과 스웨덴의 현행제도를 고려해서 있을 법한 두 가지 방안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기본소득제로 현행의 소득보장제를 대체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제로 현행의 소득보장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2.2.1 단순 기본소득제

현행의 소득보장제를 완전하게 대체하는 기본소득제는 어떤 것일까? 사회보장이 목적인 기본소득은 건강한 보통 개인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처럼 보통사람과는 특별한 소요(needs)가 있는 사람들의 최저생계비를 기본소득으로 삼는다면 자원의 낭비가 심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본소득의 두 가지 조건을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기본소득이 소득을 보충해주는 수당이 아니라 대체해주는 급여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조건만을 가장 단순하게 충족시켜주는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기존 사회급여를 대체한 최저생계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주로 소득을 대체해 주는 육아급여, 병가급여, 산재보상급여, 실업급여, 사회부조의 생계비 등과 같은 모든 사회급여는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과 같이 소득을 보충해주는 사회수당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소득에 과세하여야 하며, 가구소득이 가구 기본소득 총액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기본소득 총액만큼 과세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사회보험의 기여금은, 급여가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조세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제를 '단순 기본소득제'로 부르기로 하자.

2.2.2 보완 기본소득제

단순 기본소득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사회급여에 비해 대체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의 최중증 산재 장애인에게는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데, 단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급여가 최저생계비(504,344원⁹⁾)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급

격한 사회급여의 감소는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많은 여러 사람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소득보다 높은 현행의 사회급여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제도에서 실질 사회급여¹⁰⁾를 기본소득보다 적게 받는 사람의 급여는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며, 실질 급여가 기본소득이상인 사람은 기본소득만큼 세금을 더 내야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소득에 과세하여야 하며, 가구의 소득이 가구 기본소득 총액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기본소득 총액만큼 과세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도 각종 사회보험 급여를 위한 기여금은 조세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보완 기본소득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현행 제도를 기본소득제가 보완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3 사회보장제의 비교 기준

우리의 연구는 기본소득의 전과 후, 한국과 스웨덴의 기본소득제 도입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여러 소득보장제들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에게 최저 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소득보장제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가? 소득보장의 현실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그것이 생존권의 사회적 보장이라는 목적에 얼마나 적합한가일 것이다. 소득보장제도의 목표의 측면에서 중시해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사회 성원들과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활 위기를 포괄하며, 어느 수준에서 보장하는가이다. 보장의 수준은 급여의 기존소득 대체율, 보통 사람들의 최저생계¹¹⁾ 보장, 절대 최저생계 보장과 관련된다.

9) 이것은 정부가 정한 2010년 1인 최저생계비이다.

10) 이것은 사회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컨대 스웨덴에서는 사회급여에도 세금이 붙는다. 이것은 어찌 보면 행정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을 고려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11) 이것은 특수한 소요를 가지지 않는 건강한 보통 사람들의 최저생계를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장애인처럼 특별한 소요를 가진 사람들의 최저생계까지 포괄(包括)하는 것을 절대 최저생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 사회의 소득보장 제도를 점검할 때는 그 목적 이외에도 수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단적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자원 동원 및 배분의 효율성이다. 이것은 얼마나 적은 행정비용으로 재원을 동원하고 보장소득을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편 재원의 생산, 곧 노동을 장려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에 대한 보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공동체가 파괴되면 더 많은 생존 위기가 발생하고 더 많은 사회보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소득보장이 가족 공동체의 유지나 형성에 기여하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결국 치사랑, 내리사랑, 끼리사랑¹²⁾을 얼마나 권장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소득보장의 비용이다. 이것은 소득보장의 포괄성 및 보장의 수준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생계위기의 종류 포괄성, 대상자 포괄성, 소득보장의 수준, 사회급여의 기존소득 대체율, 보통인의 최저생계 보장, 절대 최저생계 보장, 자원 동원 및 배분의 효율성, 노동 장려 정도, 산재 보훈 정도, 치·내리·끼리 사랑을 장려(獎勵)하는 정도, 소득보장의 비용 등이 한국과 스웨덴의 기본소득제 도입 전과 후 상황 등을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의 기본소득제 도입 상황의 전후 비교

3.1 한국 현행 소득보장 개요

먼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생애 순서별 소득 위기를 따라서 살펴보기로 하자.

2010년 한국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산전후(産前後)휴가급여로 처음 60일간 고용주와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통상임금을 받고¹³⁾, 이후 30일간 고

12) 치사랑은 효(孝)와 같이 아래 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사랑, 내리 사랑은 자(慈)와 같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사랑을 가르친다. 끼리사랑은 동기간이나 부부간의 수평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치사랑과 내리사랑에 조응하는 말을 만들어 본 것이다.

용보험공단으로부터 135만원을 받는다.¹⁴⁾ 6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여성 노동자는 월 50만원의 육아휴가급여를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1년간 받을 수 있다¹⁵⁾.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에는 있는 아동간병휴가급여, 아동수당, 장애아동 보호 수당 등은 없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질병과 사고로 장애인이 되면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하인 사람의 장애연금은 최저 220,000원에서 최고 662,000원이다.¹⁶⁾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원 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이 가장 심한 정도의 장애를 입고 퇴직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기간(혹은 퇴직직전 3년간)¹⁷⁾ 평균보수 월액의 50에서 76%의 퇴직급여를 받는다.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 자산 조사 등을 받은 후 '장애인연금'으로 불리는 장애수당¹⁸⁾,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로 장애를 얻은 사람은 장애등급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애보상연금을 받는다. 가장 심한 일등급의 장애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13) 대기업 노동자는 통상임금 전액을 기업으로부터 받는다. 중소기업 노동자는 통상임금이 13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월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통상임금을 받으며,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 원은 공단으로부터 받고, 그 초과분은 기업으로부터 받는다.

14) 근로기준법 74조, 고용보험법시행령 101조

15)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1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1조의 3

16) 2010년 연금관리공단 전자방(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3.jsp)

17) 연금 기준 소득은 2009년까지는 퇴직직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이다. 2010년 이후 가입 분에 대해서는 가입기간 평균보수월액이 적용된다. 예컨대 20년을 근무하고 2015년 말에 퇴직한 사람은 2009년 이전 가입기간 14년에 대해서는 퇴직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이, 2010년 이후 6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20년 가입기간 평균보수월액이 적용될 것이다.

18)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이 2010년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장애수당'으로 중증장애인인 '수급자'에게는 월 13만원,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에게는 월 12만원 지급하였다. 그런데 새로운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라는 이름으로 각각 15만원과 13만원까지 지급한다(장애인연금법과 신영아 복지부 공무원의 설명에 따름). 그러나 이것을 '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연금은 본봉에 해당되는 급여 중의 하나이고, '장애인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본봉에 해당되는 생계급여나 소득(차상위계층)을 보충해주는 수당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329일분(평균임금의 90%)이다. 공무원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얻은 공무원, 군인이나 사립학교교원은 각 연금관리 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에 따라 가입기간(혹은 퇴직직전) 보수평균 월액의 15-80%를 장애급여로 받는다.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으면 병가급여(sickness benefit)를 받는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런 병가급여가 없다.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휴업급여는 휴업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70%이다¹⁹⁾. 산재로 사망한 경우는 그 유가족에게는 장례비와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기초유족연금과 가산금액의 합인데, 기초유족연금은 사망전 3개월 평균 소득의 47%이고, 가산금액은 부양가족 1명 당 기초연금액의 5%이다.

실업자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최소 90일에서 최장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액은 실업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다. 실업급여의 최저액은 일인 최저생계비의 90%이고, 최고액은 일 40,000원(월1,240,000=40,000원*31일)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5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연금(완전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넘어야 한다. 완전노령연금의 최저액은 220,000원이고 최고액은 1,133,730원이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가 넘은 퇴직자가 받는다. 퇴직연금액은 가입기간(혹은 퇴직 직전 3년간) 평균소득의 50%에서 76%이다. 한편 사회부조연금인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득 및 자산 조사의 결과에 따라 홀노인에게는 91,000원까지, 부부 노인에게는 145,600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생계가 곤란하지만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준다.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조작한 가상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만큼(최저생계비-소득인정액)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란 이름을 붙여서 지급한다. 정부에서 정한 2010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04,344원, 4인 가구는 1,363,091원이다.²⁰⁾

19) 노동자가 몸이 아파서 직장을 쉬는 경우, 산재로 인정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지옥 가나 천당 가나와 같다. 스웨덴에서는 일반 병가급여는 기존소득의 80%이고 산재 병가는 100%이므로 큰 차별이 없다.

3.2 단순 기본소득제 도입 상황 검토

3.2.1 단순 기본소득제 내용

한국에 단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급여를 대체하고, 기본소득은 한국의 최저생계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현행 사회급여로는 산전후(産前後)휴가급여, 육아휴가급여,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상급여, 실업급여, 국민연금·특수직역 연금·기초노령연금, 사회부조의 생계급여 등이 있는데, 단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이런 사회급여들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변변한 사회수당은 거의 없지만, 사회부조에 의한 '장애인연금'이라 불리는 장애수당 등과 그나마 있는 사회수당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회권우(social service)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급대상은 논의 수준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현행의 소득보장제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해두자. 아동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스웨덴과 같이 사회보장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아동의 소득은 보장하지 않고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 사이의 비교를 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액은 2010년 정부가 정한 1인 최저 생계비인 504,344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가구소득이 가구 기본소득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기본소득 만큼 더 과세하기로 하자. 물론 이 경우 기본소득을 넘는 가구의 과세후 실질소득이, 기본소득 이하 가구의 과세후 실질소득보다는 많도록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사회보험의 기여금은, 급여가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조세로 대체되는 것으로 하자.

3.2.2 도입 전후의 비교

단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생계위기의 종류 포괄성이 증대된다. 현행

20)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504,344원, 2인 858,747 원, 3인 1,1110,919 원, 4인 1,363,091원, 5인 1,615,263 원, 6인 1,867,435 원이다.

의 소득보장제에서는 병가급여가 없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종류의 위기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단순 기본소득제는 모든 종류의 생계위기를 포괄하게 된다.

대상자의 포괄성이 완벽해진다. 현행 소득보장제에서는 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소득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모든 사람이 소득보장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자식이 있다고 사회부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차상위계층'이란 말도 사라질 것이다.

단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보장의 정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60일간 임금의 전액과 30일간 135만원을 받는 산전산후 휴가급여, 통상임금의 70%을 받는 산재의 휴업급여, 통상임금의 90%을 받는 산재의 1급 장애보상연금, 가입기간 평균의 50%이상을 받는 특수직역연금 등은 기본소득 504,344원으로 대체됨으로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실업급여도 대체로 줄어들는데, 많게는 월 약 74만원(최고 실업급여액 124만원-기본소득 504,344원)까지 줄어든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줄어든다고만 말할 수 없다. 현행 실업급여의 기간은 240일(8개월)이하인 반면 기본소득제의 기간은 한이 없으므로 장기실업자의 실업기간 총급여액은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고소득자의 경우 약 16만원(최고 장애연금최고 662,000원-기본소득 504,344원)까지 줄기도 하고 약 27만원(기본소득 504,344원-최저 장애연금 23만원)까지 줄어들기도 한다. 노령연금도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의 경우에는 63만원(최고 연금- 기본소득)까지 줄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기여 정도가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28만원(기본소득-최저 연금)까지 늘어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늘어나기만 하는 것도 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부조는 현재 금액이 기보노령연금보다 적기 때문에 늘어난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거의 변동이 없다. 병가급여, 아동간병급여는 아예 없기 때문에 기본소득만큼 늘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특수직역연금,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소득자의 실업급여, 산재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줄어들고, 나머지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큰 변동이 없다. 따라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위기시의 소득보장의 수준은 대체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최저생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한국 사

회에는 아동이나 장애 등으로 추가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회수당 등이 거의 없고, 교육 및 보육의 대부분과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딸린 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최저생계만 보장될 뿐이다.

<표 1> 단순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급여 변화(기본소득 504,344원)

구분	현재	변화
산전후휴가급여	60일 임금의 전액, 30일 135만원	감소
육아휴가급여	1년 이내 휴가 중 월 50만원	거의 동일
아동간병급여	없음	기본소득만큼 증가
장애연금	국민연금가입자 1급 장애연금 23만원-약 67만원	대부분 증가, 소득이 높은 사람 17만원까지 감소
산재급여	휴업급여 통상임금 70% 1급장애보상연금 통상임금 90% 유족급여 통상임금의 47%	대부분 감소
병가급여	없음	기본소득만큼 증가
실업급여	240일 이내 약45만원-약124만원	단기 실업자 대부분 감소, 장기실업자 증가한 셈
국민연금(노령)	완전노령연금 22만원-약113만원	절반정도씩 감소나 증가
유족연금	약10만원-약50만원	증가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50%-76%	거의 다 감소
기초노령연금	1인 최대 9만원	증가
사회부조	1인 최대 504,344 원	대부분 증가

단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재원 동원의 행정비용은 어떻게 될까? 현재 사회부조와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보장 재원은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동원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단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소득보장을 위한 재원동원 방식이 조세로 통일되어, 복잡한 각출절차가 간소되므로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배분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여러 사회보험에서 지급조건을 확인하고

사회부조에서 자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급여여부와 급여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복잡한 절차가 기본소득제에서는 없어지고, 모든 사람의 통장에 일정금액을 자동입금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노동의 유인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의 소득 대체율은 줄어들 것이므로 노동시장 유인력은 약간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소득대체율이 낮은 상황이므로 유인력이 증가하는 정도는 미미할 것이다. 저소득층은 기본소득이 보장되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근근이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부조와는 달리 노동을 할수록 가처분소득은 증가하므로 가능한 한 노동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더라도 노동의 유인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한편 산재 피해자에 대한 보훈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공동체 살이를 장려하는 성격이 있다. 사회부조 등과는 달리 기본소득제에서는 가구의 급여 총액이 가족원수에 비례해서 늘어난 반면, 일인당 생활비는 가족원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들므로 기본소득제가 공동체 살이를 유인하는 물질적 자극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치사랑, 내리사랑, 끼리사랑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 단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치사랑의 가능성이 조금은 커질 것이다. 지금은 자식이 있는 노인은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사회부조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이 노인과 동거하는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이런 노인들도 소득이 안정되므로, 같이 사는 자식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리사랑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절대 빈곤이 해소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절망 상태는 많이 해소될 것이다. 특히 전업주부에게도 최저 소득이 보장됨으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할 가능성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출산과 육아의 좋은 장려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기본소득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포상은커녕 보상도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끼리 사랑을 조장하면서도, 이혼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예컨대 대학생들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생계소득이 안정되고,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결혼을 증가시킬 가능

성이 크다. 그러나 이혼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현재는 소득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의존해야 하므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기본소득이 확보되면 이런 강제가 약해진다. 이혼의 자유가 확대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기본소득은 결혼을 유인하면서도, 이혼의 자유를 확대시키기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단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사회보장비의 외형(外形)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심지어 고소득자까지, 기본소득이라는 사회급여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별 급여 액수는 줄어드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줄어드는 금액은 미미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세수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으로 받은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낼 것이며, 면세점이 없어져서 저소득층의 세금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증가한 사회보장비의 외형은 늘어나는 세수로 대부분 상쇄(相殺)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쇄 부분을 빼더라도 소득보장의 전체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현행 소득보장제도에서는 사회보험이라는 일차막이 그물(網)은 물론 사회부조라는 마지막 막이 그물도 너무 성글기 때문에 소득보장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다.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모든 사람이 소득보장의 대상이 되고, 소득보장의 수준도 대부분 증가한다. 따라서 실질 사회보장비가 그 만큼 증가할 것이다. 물론 사회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 사회보장비는 감소하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줄어드는 것보다는 느는 것이 더 클 것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로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저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구들은 기본소득을 받은 만큼을 세금을 더 낼 것이므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현행의 국민기초생활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유사한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는 약 150만 명이고(보건복지부, 2010), 2009년 급여 총액은 약 4조 원이다(통계청 2011년 전자방). 단순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대상자가 3배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순수 추가비용은 연 8조원 정도가 될 것이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 급여 중에서 기본소득 초과분 총액 4조 원으로 가정하면 추가비용은 4조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노령연금 수령자 늘어나면 기본소득초과 연금의 총액이 10조 원²¹⁾ 이상이 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단순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사

회보장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3 보완 기본소득제 도입 상황 검토

3.3.1 보완 기본소득제 내용

보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단순 기본소득제에서는 폐기되어야 할 산전후(産前後)휴가급여, 육아휴가급여, 산재보상급여, 실업급여,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 연금 등과 같은 사회급여는 현행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과 사회부조의 급여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생계비를 보충해 주는 사회수당이나 사회권우도 현재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두자. 기본소득액은 2010년 정부가 정한 1인 최저 생계비인 504,344원이라고 하자.

한편 주로 사회보험으로 지급되는 현행 급여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이러한 급여를 위한 자원의 동원과 배분 방법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지금도 동원과 배분 과정이 매우 복잡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재원 동원 및 배분의 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고 비용은 더 많이 들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사회보험 기여금을 사회보장제로 통합하여 징수하고, 기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사회급여와 수당을 소득보장청에서 일괄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스웨덴처럼 재원의 징수는 조세로 하되, 배분은 소득보장청과 같은 기관이 소요와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서 해야 할 것이다.

보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가구소득이 가구 기본소득 총액을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기본소득 총액만큼 더 과세하며, 기존의 사회보험급여를 위한 기여금은 조세로 대체하기로 하자.

3.3.2 도입 전후의 비교

- 21) 현재 연금 수령액은 22만원-113원 사이이다. 이 값의 중앙값을 평균값이라고 하면 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67만원이다. 노령연금인구 수급자 인구가 500백 명이 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을 토대로 대략 계산하더라도 연금 기본소득 초과 연금 총액은 10조원(500만*12개월*17만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보완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현행제도에 비해 생계위기의 종류 및 대상자 포괄성이 거의 완벽해진다. 위기 시 소득보장의 수준은 증가하거나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단순 기본소득제에 비교해서도 소득보장의 수준은 단순 기본소득제에서 감소한 급여들을 현행대로 올려준 것만큼 증가할 것이다. 현행제도에 비하면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높아질 것이나, 나머지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최저생계는 보장되지만, 사회수당이 미미하고, 의료 수발 보육 교육을 위한 자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최저생계는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재원 동원 및 배분 비용도 절감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 기본소득제의 경우와 비교하면, 기존의 사회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요와 소득 수준을 확인해서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물론 현행의 급여수준을 현행의 사회보험 등의 방식으로 유지해 준다면 재원의 동원 및 배분 비용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노동을 장려하는 정도는 현행과 비교하여 차이는 없을 것이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사람들의 소득대체율과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는 변화가 없으므로 노동을 장려하는 정도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한편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과 탈상품화 정도가 상승하는 편이므로 노동을 장려하는 힘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을 할수록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기본소득제의 특성상 노동을 장려하는 힘도 커질 것이므로, 저소득층에게 노동 장려하는 힘은 결국 변화가 없을 것이다. 산재에 대한 보훈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물론 단순 기본소득제의 경우에 비하면 개선될 것이다.

단순 기본소득제와 마찬가지로 치사량의 부담은 줄어들고, 결혼, 출산과 육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 경제 상황은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실질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현행제도에 비하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이나 기본소득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만큼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단순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기본소득을 초과하는 사회급여 총액만큼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한편 단순 기본소득제의 추가 비용을 거칠게 추산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회보험 급여의 기본소득 초과분을 빼지 않은 금액이 연 8조 원이라고 추정하였으므로, 이런 가정에 따르면 보완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따른 추

가 비용은 8조 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보완 기본소득제의 도입에 따른 급여 변화(기본소득 504,344원)

구분	현재	변화
산전후휴가급여	60일 임금의 전액, 30일 135만원	불변
육아휴가급여	1년 이내 휴가중 월 50만원	거의 동일
아동간병급여	없음	기본소득만큼 증가
장애연금	국민연금가입자 1급 장애연금 23만원-약 67만원	대부분 증가, 고소득자 불변
산재급여	휴업급여 통상임금 70% 1급장애보상연금 통상임금 90% 유족급여 통상임금의 47%	대부분 불변
병가급여	없음	기본소득만큼 증가
실업급여	240일 이내 약45만원-약124만원	단기 실업자 대부분 불변, 장기실업자는 증가함
국민연금(노령)	완전노령연금 22만원-약113만원	절반정도씩 불변이나 증가
유족연금	약10만원-약50만원	증가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50%-76%	거의 다 감소
기초노령연금	1인 최대 9만원	증가
사회부조	1인 최대 504,344 원	대부분 증가

4. 스웨덴의 기본소득제 도입 전후 상황 비교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를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보았다. 이제부터 한국의 기본소득제 도입 상황을 스웨덴의 경우와 비교해 보는 작업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스웨덴의 현행 소득보장제도와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4.1 스웨덴 현행 소득보장 개요

스웨덴에서는 주로 소득보장청(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이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서 소득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급여와 수당을 제공한다. 이것은 교육, 보육, 의료, 수발의 권우(眷佑, service)를 거의 무료로 공여(供興)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재원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조세로 충당한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²²⁾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소득보장의 중요한 것들을 인생행로를 좇아서 살펴보기로 하자. 임신한 여성에게는 50일간 소득의 80%²³⁾인 임신급여(Pregnancy Cash Benefit)를 지급할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390일간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육아급여(parental benefit)를, 아이가 아픈 경우 그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단기아동간병급여(temporary parental benefit)를 지급한다. 16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는 1명당 1,050(171,948원)²⁴⁾크로나 이상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아동보호수당(childcare allowance)으로 매월 최저 2,229크로나(365,021원)에서 최고 6,688크로나(1,095,227원)까지 지급한다. 성인장애인에게는 활동보상급여(activity compensation) 및 상병보상급여(sickness compensation)라는 이름으로 기존 소득의 64% 혹은 매월 7,490크로나(1,226,562원)에서 8,560크로나(1,401,786원)의 최저보장급여를 제공한다. 산업재해로 다친 경우는 손실소득의 100%를 산재보상급여(work injury compensation)로 지급한다. 실업자에게는 기존소득의 70-80%인 실업급여를 2년까지 지급한다. 이 실업급여는 예외적으로 노동

22) 이것을 사회보험의 기여금으로 오해하기 쉽다. 이것은 국가가 여러 사회보장비로 쓰기 위해서 거두어들이는 목적세이다. 그런데 세금을 징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급여를 지급할 때도 소득을 고려하므로 사회보험과 유사한 면이 없지는 않다. 스웨덴의 국세청에서는 전체 기여금의 60%는 세금의 성격을, 40%는 강제 사회보험 기여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Sweden Tax Agency, 2010: 11).

23) 물론 고소득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0년의 경우 년 321,000크로나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이 소득 기준 일급의 80%를 임신 휴가 일수로 곱한 금액만 지급한다. 이런 원칙은 소득을 대체해주는 모든 사회복지급여에 다 적용된다.

24) 2010년 7월 27일 한국은행 기준환율 163.76을 적용한 것이다. 이 아래는 모두가 환율을 적용할 것이다.

조합이 운영하는 실업금고에서 제공한다. 노인에게는 홀노인 기준으로 매월 7,597크로나(1,244,085원)에서 16,000크로나(2,620,160원)의 연금을 지급한다²⁵⁾. 이밖에도 다양한 주거수당과 같은 여러 수당과 급여가 있다. 그런데 이런 촘촘한 소득보장의 그물에도 구멍이 있기 때문에 최후의 안전망인 사회부조로 최저생계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한다. 이 사회부조의 대상자는 주로 심신이 건강한 장기 실업자이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²⁶⁾.

4.2 단순 기본소득제 도입 상황 검토

4.2.1 단순 기본소득제 내용

스웨덴에 단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임신급여, 육아급여, 단기아동간병급여, 활동보상급여, 상병보상급여, 산재보상급여, 병가급여, 실업급여, 노령연금, 사회부조 최저생계비 등과 같은 모든 사회급여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며, 아동수당, 장애아동보호수당, 장애수당, 주거수당 등의 사회수당, 그리고 여러 사회권우(social service)는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최저생계비는 7,000크로나(1,146,320원)로 보아도 무방하다. 2010년 최저실업급여는 7,040크로나(1,152,870원)이기(스웨덴 실업금고 전자방, 2010, www.ams.se)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소득액은 7,000크로나(1,146,320원)로 가정한다.

이와 함께 그 대상을 스웨덴 모든 영주권자로 하되, 현행의 소득보장제도를 참작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시키기로 하자. 현행의 사회보장제도에서도 18세 미만의 소득보장은 따로 없고, 아동의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조세는 한국의 단순기본소득제의 도입 경우와 동일하게 하자.

25) 이것은 2007년 연금액이다. 이것은 2007년 1월 채구묵, 박승희, 김금자 등이 스톡홀름 나카 소득보장청 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자들로부터 확인한 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액들 중에서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0년 금액이다.

26) 스웨덴 소득보장에 관한 자세한 것은 박승희·채구묵 외(2007)와 Försäkringskassan(2010)를 참조하기 바란다.

4.2.2 도입 전후의 비교

이런 단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스웨덴 국민의 생계위기를 포괄하는 정도는 어떻게 변할까? 현재에도 사회보공(社會普供)²⁷⁾ 방식에 의해서 거의 모든 생계위기를 포괄하고, 소득보장의 최후 한계를 사회부조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생계위기의 포괄성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소득위기의 포괄성에는 변화가 있을 리 없다. 그러나 기본소득제에서는 소득위기를 따지지 않고 기본소득을 지급하므로 위기 포괄성이 약간 증가한다고 억지로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스웨덴 소득보장제도는 대상자의 포괄성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현재 스웨덴에서는 소득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사회보공의 방식으로 구제(救濟)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는 소요 위기를 야기(惹起)할 수 있는 상황(狀況)이 확인되면 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장기실업자의 생계위기는 소득 및 자산조사를 거친 후 구제한다. 이처럼 현행 제도의 대상자 포괄성도 완전해 가깝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더라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장기 실업자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대상자 포괄성은 조금이라도 증가한다고 말할 수 는 있다.

단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소득보장의 수준은 어떻게 변할까? 스웨덴의 사회보장 소득은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한 가운데, 기존 소득에 비례해서 지급된다. 이와는 달리 단순 기본소득제에서는 소득 위기 시에 모든 보장 급여가 기존의 사회급여 하한선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으로 획일화된다. 따라서 사회보장 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사회부조의 경우는 약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성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기본소득은 사회부조와는 달리 사람 수에 비례해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체로 위기 시 소득대체율은 크게 하락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최저생계는 물론, 절대 최저생계

27) 이 말은 사회부조, 사회보험 등과 견주는 개념이다. 이것은 조세로 재원을 동원하여, 국가가 자산 및 소득 조사 등을 하지 않고, 기여여부도 따지지 않은 채, 소요의 위기만 확인되면 현금이나 권위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의 방식을 의미한다(박승희, 출간예정).

는, 특수한 사람들의 소요를 잘 배려해주는 사회수당과 사회권우가 불변하는 한 이전과 같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이러한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사회전체 수준의 물리적 최저 생계는 보장될 수 있겠지만, 많은 개인들의 심리적 최저 생계는 보장될 수 없다. 저소득자의 경우는 현재와 다를 것이 없으나, 그 이상의 소득자는 소득위기가 닥치면 현재와는 달리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다.

<표 3>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급부의 변화

(단위: %, 크로나)

구분	현행		기본소득	급여액 변화
사회 급여	임신	소득 80, 최고 21,400	최저생계비 7,000	대폭 감소
	양육	소득 80, 최고 21,400		대폭 감소
	아동간병	소득 80, 최고 21,400		대폭 감소
	활동,상병	소득 64,최저 7490 최고 17,120		대폭 감소
	산재보상	손실금 전액		대폭 감소
	병가	소득 80, 최고 2140		대폭 감소
	실업	소득 80, 최저 7040 최고 14,960		대폭 감소
	연금	최저 7,597(홀), 최고 16,000		감소
	사회부조	가구별 생계비		증가
사회수당	불변			
사회권우	불변			

단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더라도 재원 징수(徵收)의 비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소득보장을 위한 재원동원 방식에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국세청과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과 일반조세로 징수하게 될 것이다.

재원의 배분 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배분 절차가 많이 간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종 사회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소요위키 여부, 현재 소득, 과세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기본소득제에서는 이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만큼 배분에 들어가는 행정

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예컨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접수를 받고, 과세 과세 경력 등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가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 없어지면, 그 만큼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다.

노동을 장려하는 힘은 커질 것이다. 기존의 소득보장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높기 때문에, 탈상품화 정도가 높다. 예컨대 노동자들이 아파서 쉬다고 해도 소득의 80%가 보장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돈을 벌지 않고 마음 놓고 요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대부분 사람들의 위기 시 기본소득의 소득대체율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마음 놓고 쉬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탈상품화의 정도가 약해진 반면, 노동시장 유인력은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부조의 대상자였던 저소득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유인력도 커질 것이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줄어들어 가처분소득이 불변하는 사회부조와는 달리 기본소득제에서는 기본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이므로 노동의 유인력이 증가한다.

이와는 달리 산재 노동자에 대한 보훈 정도는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산재급여는 사회보장과 함께 보훈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에서 산재 노동자의 소득손실을 전액 보상하였다. 현행 제도에서 산재보상급여는 유일하게 소득의 100%이다. 그런데 단순 기본소득제에서는 산재급여가 최저생계비인 기본소득으로 고정되어, 최저소득자들을 제외한 대부분 산재자의 급여를 현저하게 하락시킬 것이다.

스웨덴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기본소득의 총액이 증가한 반면, 생활비는 절감되므로, 기본 사회부조 대상자들에 대한 공동체 유인력은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대한 공동체 유인력이 커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족원수의 증가에 따른 생활비 절감 효과는 사회부조를 제외한 다른 스웨덴의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다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족원 수의 증가에 대한 생활비 절감 효과를 제외하면 기본소득제가 치사랑과 끼리 사랑을 진작(振作)하는데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다. 반대로 치사랑과 끼리사랑을 억제하는 효과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내리사랑에 대해서는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기본소득제에서는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여 일을 쉬는 경우 대부분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제의 탈상품화 효과가 매우 작

은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스웨덴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포상(褒賞)은커녕 보상(補償)마저도 축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실질 사회보장비는 앞에서 지적한 소득보장의 수준이 낮아진 만큼 줄어들 것이다.

결국 단순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사회보장비를 줄인 대신, 빈민의 수를 증가시키고 출산율을 급감시키는 것과 같은 사회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4.3 보완 기본소득제 도입 상황 검토

4.3.1 보완 기본소득제 내용

스웨덴에 보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면, 단순 기본소득제의 경우와는 달리, 기존의 사회수당은 물론 사회급여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부조의 생계급여는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스웨덴의 모든 사회급여에는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수준의 최저보장급여(guaranteed benefit)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급여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소득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기본소득은 7,000크로나(1,146,320원)로 가정하자. 한편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하므로 아동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 두자. 과세는 한국의 보완기본소득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자.

4.3.2 도입 전후의 비교

보완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단순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위기의 종류와 대상자를 포괄하는 정도가 조금은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자들이 소득 및 자산조사도 받을 필요 없이 기초생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완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소득보장의 수준은 조금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급여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대체율은 변함이 없으나, 사회부조 대상자들의 가구 기본소득 총액이 단순 기본소득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구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증가할 것이기 때문

이다. 여기서도 보통 최저생계와 절대 최저생계는 잘 보장될 것이다.

<표 4> 보완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급부의 변화

(단위: %, 크로나)

구분	현행		기본소득	급여액 변화
사회 급여	임신	소득 80, 최고 21,400	최저생계비 7,000	불변
	양육	소득 80, 최고 21,400		불변
	아동간병	소득 80, 최고 21,400		불변
	활동,상병	소득 64, 최저 7490 최고 17,120		불변
	산재보상	손실금 전액		불변
	병가	소득 80, 최고 2140		불변
	실업	소득 80, 최저 7040 최고 14,960		불변
	연금	최저 7,597(홀), 최고 16,000		불변
	사회부조	가구별 생계비		증가
사회 수당	불변			
사회 권우	불변			

보완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더라도 재원의 동원 및 배분의 비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물론 단순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그 비용이 클 것이다. 노동을 장려하는 힘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소득대체율과 탈상품화 정도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저소득자들의 노동을 권장하는 힘은 커질 것이다. 단순 기본소득제의 경우처럼 노동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처분소득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재노동자의 보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보완 기본소득제도도 단순 기본소득제와 마찬가지로 사회부조의 대상자들에 대한 공동체 유인력은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단순 기본소득제와는 달리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상(補償)은 현행제도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사회보장을 위한 실질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현행 제도에 비해 사회부조의 비용이 증가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공공부조의 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는 미미할 것이다.

5.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이제 한국에서 도입할 만한 기본소득제를 스웨덴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5.1 한국 단순 기본소득제와 스웨덴 제도들의 비교

한국의 단순 기본소득제의 위기 포괄성과 대상자 포괄성은 스웨덴의 현행 제도와 단순 및 보완 기본소득제와 마찬가지로 거의 완전해 가깝다. 그러나 보장 수준은 스웨덴의 단순 기본소득제와는 비슷하지만, 현행 소득보장제와 보완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다. 따라서 이 제도에서는 소득위기를 맞으면 급격하게 소득이 감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의 단순 기본소득제는 스웨덴의 세 경우처럼 보통 사람들의 최저 생계는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스웨덴의 경우들과 달리 모든 사람들의 최저생계는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은 기본소득이 작아서가 아니라 특별한 소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사회수당이 거의 없고²⁸⁾ 치료 및 수발비의 자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단순 기본소득제의 재원 동원 및 배분 효율성은 스웨덴처럼 높을 것이다. 노동 유인력은 스웨덴에 비하면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가 낮기 때문에 매우 클 것이다. 산재 보훈 수준은, 스웨덴의 현행과 보완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매우 낮다.

치사량과 내리사량을 장려하는 정도는 스웨덴의 경우들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스웨덴의 현행 제도와 보완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내리사량의 장려 정도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단순 기본소득제의 소득보장의 비용은 스웨덴의 현행 제도와 보완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소득보장의 수준이 아주 낮기 때문에 매우 적다.

28) 사회복지조 방식의 장애수당 정도가 있을 뿐이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 이것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급과 2급, 3급중복 등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소득수준이 차상위계층 이하여야 한다. 최고 월 15만원까지 받는다(장애인연금법).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과 스웨덴의 가상(假想) 기본소득제 비교

구분	한국			스웨덴		
	현행	단순	보완	현행	단순	보완
위기 종류 포괄성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대상자 포괄성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보장 수준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낮음	높음
위기 시 소득감소	큼	큼	중간	작음	큼	작음
보통 최저생계보장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절대 최저생계보장	불가	불가	불가	가능	가능	가능
재원 동원효율성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배분 효율성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높음
노동 유인력	큼	큼	중간	작음	큼	작음
산재 보훈 수준	중간	낮음	중간	높음	낮음	높음
치사랑 장려	낮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내리사랑 장려	중간	낮음	중간	높음	낮음	높음
끼리사랑 장려	낮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소득보장 비용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낮음	높음

5.2 한국 보완 기본소득제와 스웨덴 제도들의 비교

한국의 보완 기본소득제의 위기 포괄성과 대상자 포괄성도 <표5>에 요약된 것과 같이 스웨덴의 현행 제도와 단순 및 보완 기본소득제와 마찬가지로 거의 완전해 가깝다. 그러나 보장 수준과 위기 시 소득대체율은 스웨덴의 단순 기본소득제보다는 약간 높지만, 현행 소득보장제와 보완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매우 낮다. 한국의 보완 기본소득제도 스웨덴의 세 경우처럼 보통 사람들의 최저 생계는 보장할 수 있으나, 스웨덴의 경우들과 달리 모든 사람들의 최저생계는 보장할 수 없다.

한국의 보완 기본소득제의 재원 동원 및 배분 효율성도 스웨덴의 세 경우처럼 높을 것이다. 노동 유인력은 스웨덴의 단순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가 높은 만큼 작을 것이나, 현행 제도와 보완 기

본소득제에 비하면 클 것이다. 산재 보훈 수준도, 스웨덴의 단순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높지만, 현행과 보완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낮다.

보완 기본소득제도 치사량과 내리사량을 장려하는 정도는 스웨덴의 세 경우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은 스웨덴의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현행제도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스웨덴 현행 제도와 보완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더라도 내리사량의 장려 정도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런 보완 기본소득제의 소득보장의 비용은 스웨덴의 단순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많은 편이지만, 스웨덴의 현행 제도와 보완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적다.

6. 결론과 제언(提言)

한국에서 현행 사회급여를 완전히 대체하는 단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모든 보통 사람들의 최저생계는 보장된다.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는 외형상으로는 없어진다. 소득보장의 수준도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높아진다. 자원 동원 및 배분의 비용이 감소하고, 노동의 유인력도 현재와 비슷할 것이다. 다만 산재의 보훈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노인부양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나, 출산과 아동양육의 부담은 지금보다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소득보장의 실질비용은 고소득자의 사회급여가 줄어든 만큼 줄어든 반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없어진 만큼 증가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증가할 것이다.

현행의 사회급여를 유지하는 보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단순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때의 장점들이 그대로 나타나면서도, 고소득자의 사회급여가 줄어들고 산재의 보훈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소득보장의 실질비용이 현행 제도에 비하면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없어진 만큼 증가할 것이다. 단순 기본소득제에 비하면 고소득자의 사회급여가 줄어들지 않은 만큼 많을 것이다.

이처럼 한국에 단순 기본소득제라도 도입되면 소득보장제가 많이 개선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된 스웨덴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의 현행 제도와 보완소득제가 도입된 경우와 비교해보면, 위기 시에 소득이 급감하고, 출산과 양육의 지원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큰 문제다. 이와 함께 절대적인 최저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다. 보육 및 의료, 수발의 자부담 비용이 크고, 각종 사회수당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에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소득의 사회적 보장의 형식은 완비된다고 볼 수 있으나, 소득보장의 내용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일까? 다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생계의 위협을 받을 때 피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없기 때문에, 늙은이도 젊은이도, 부자도 빈자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 결과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새 생명의 탄생마저도 막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순 기본소득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단순 기본소득제는, 이미 지적한 것처럼, 돈을 벌 수 없는 불행을 만났을 때 절대적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최후의 보루는 될 수 없을지라도, 최저의 보통생계라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댈 언덕'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리 되면 노란 절망의 싹아지는 줄어들고 파란 희망의 떡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도, 태어나고픈 생명을 꺾는 것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사정만을 생각하면 기본소득제는 도입해 볼 만하다.

문제는 돈이다. 돈으로 표현되는 자원만 넉넉하다면 현행 소득보장제도보다는, 단순 기본소득제를, 단순 기본소득제보다는 보완 기본소득제를, 한국형 보완 기본소득제보다는 스웨덴 형 보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단순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정도의 돈은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질 추가비용이 현행 사회부조 급여 총액과 같다고 하면 연 4조 원 정도가 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까지 고려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소득보장비가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에 돈을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수조 원을 들여서 사대강을 파고,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며, 호화판 지자체 청사를 짓는 것과 같은 '발전'정책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회용 행사(이벤트)'와 같은 사회복지정책만 절제하더라도 단순 기본소득제를 도

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완 기본소득제도 시행할 수 있는 돈도 마련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다고만 말할 수 없다. 이에 따른 실질 추가비용이 행행 사회보조 총액의 2배라면 연 8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면밀(綿密)하게 검토해 보아야겠지만, 이렇게 어렵잡아 보아도 나랏돈의 씹쓸이를 조금 줄이면 보완 기본소득제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원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자원 용처(用處)의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소득보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지금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억지로 마련하려들면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원 용처를 일시에 크게 변화시켜야 하므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하지 않다하더라도 동의를 위한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급감하는 출산율이 재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다 적합할 것이다. 1970년에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으나 2009년에는 45만 명 정도 밖에 태어나지 않는다²⁹⁾. 이미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소득보장의 주요 대상인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자원은 줄고 소득보장의 비용은 커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이대로 계속되면 더욱 심각한 재앙을 맞을 것이므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일에 자원을 적극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스웨덴처럼 소득대체율이 높은 소득보장을 전제 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단순 기본소득제라도 먼저 도입하여 소득보장의 체제라도 갖춘 다음, 자원의 생산력과 노동력의 재생산 과정을 개선시켜가면서 소득의 보장의 수준을 올려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이다. 물론 최근 무상급식으로 주민투표까지 강행하는 세정을 감안할 때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이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29) 1970년에 1,006,645명, 1980년에 862,835명, 1990년에 649,728명, 2000년에 634,501명, 2009년에 445,20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통계포탈, 인구동향조사, 2010 7월, http://kosis.kr/nsportal/abroad/abroad_01List.jsp).

참고문헌

- 박홍규. 2008. "기본소득 연구." 『민주법학』 36호.
- 이명현. 2007. "유럽에서의 기본소득 구상의 전개 동향과 과제-근로안식년
과 시민연금 구상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3권 제3호.
- 곽노완. 2007.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빠레이스, 네그리,
베르너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대와 철학』 제18권 2호.
- 강남훈·곽노완. 2008. 『한국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전략』. 민노총 정책연
구연.
- 김교성.. 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
36권 2호.
- 박승희·채구묵. 2007.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 Försäkringskassan. 2010. Social Insurance. www.fk.se.
- Philippe Van Parijs. 2004.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wenty-first Century." Politics & Society Vol. 32(1) 7-39.
- Sweden Tax Agency. 2010. "Taxes in Sweden." www.skatteverket.se.
-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10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 [http://www.moh
w.go.kr](http://www.moh
w.go.kr).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현황"
통계청, 2011, "2009년 국민기초생활급여 총액" [http://stat.mw.go.kr/stat
/depart/depart_list.jsp?menu_code=MN01020101](http://stat.mw.go.kr/stat
/depart/depart_list.jsp?menu_code=MN01020101),

<Abstract>

Comparing the Application situations of Basic Income Program to Korea and Sweden

Park, Seung He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Kim, Keum Ja

Graduate Student, Sungkyunkwan University

Kim, Jung Hwan

Graduate Student, Sungkyunkwan University

Hong, Sae Young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Recently it is being insisted that the basic income program be introduced in Korea. We can imagine two kinds of the feasible basic income programs. One is the simple basic income programs, replacing the existing social benefits. The other one is the supplementary one, supplementing the existing social benefits. If the simple basic income program were put into practice, people would enjoy income security without exception, the level of income security would be higher and the efficiency for mobiliza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would increase. But the social benefit for the industrial accident workers would be decreased too much. If the supplementary basic income program were put into operation, the merits of the simple basic income

program would be sustained and the demerits would disappear. But, compared with even for current income security system of Sweden, it would have many problems. The replacement rate of the existing income by the social benefits would be too low. The minimum living standard of all people would not be guaranteed because of the high private share of cost for medical service and so forth.

Key words: Basic Income, simple Basic Income program, supplementary Basic Income program

성명: 박승희

소속: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mail: shpark@skku.edu

접수일자: 2011년 7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8월 20일